www.unikorea.go.kr

Gaeseong Industrial Complex Guide
개성공단길라잡이

발행처 :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발행일 2007. 3)
Tel (02)3783-7422 Fax (02)3783-7490
캘리그래프 :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
Designed by K-pro 02)3446-1118

www.unikore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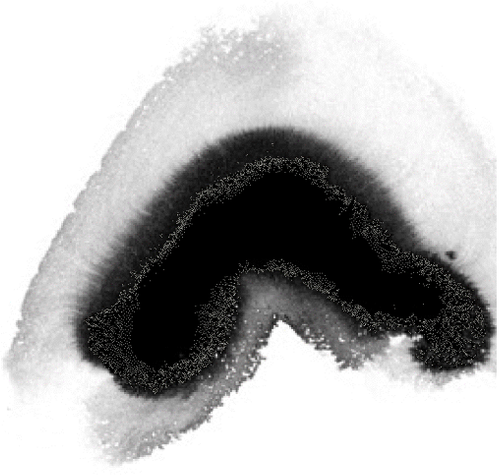

開城

Gaeseong Industrial Complex Guide

개성공단길라잡이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開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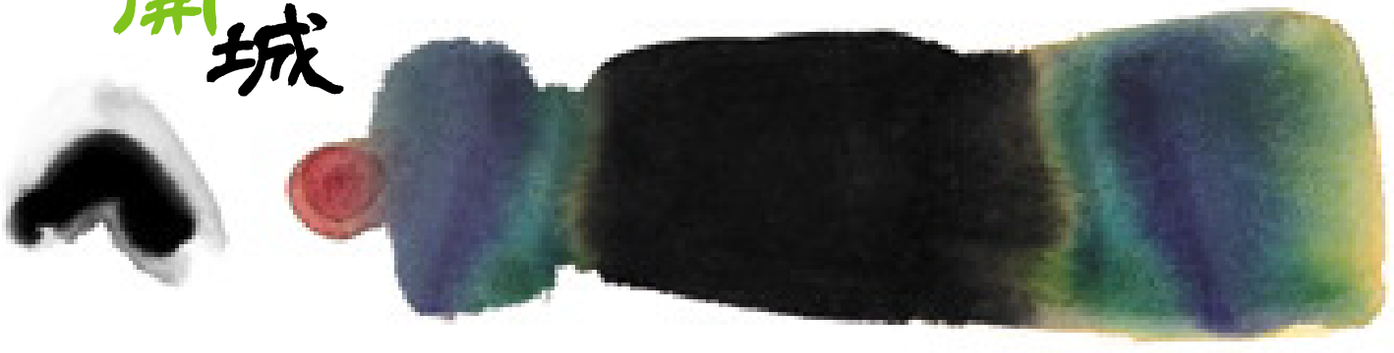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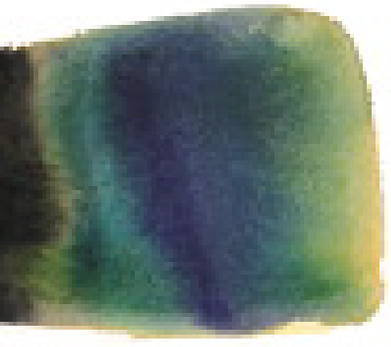

Contents

Ⅰ. 개성공단 사업은 04
개관

Ⅱ. 1단계 사업 어디까지 왔나 08
추진현황

Ⅲ. 개성공단 기업환경은 어떠한가 10
입지 · 기반시설

Ⅳ. 개성공단에 진출하려면 어떻게 14
투자절차와 방법

Ⅴ. 개성으로 가는 길, 개성에서 오는 길 22
인원 · 물자 왕래

Ⅵ. 개성 현지 기업 활동은 어떻게 28
개성 현지 기업운영

Ⅶ. 개성공단 입주기업 활동 지원 36
기업 활동 지원

Ⅰ. 개성공단 사업은

국내 중소기업의 활로를 개척하여 우리 경제에 도움을 주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도 기여하는 경제사업이자 평화사업입니다.

개성공단 사업은 일차적으로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를 결합하여 남북이 모두 이익을 얻고자 추진된 "경제사업"입니다. 국내 고비용·저효율 구조 및 노동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개성공단은 새로운 활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북한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남북 상생의 "경제사업"입니다.

다음으로 개성공단 사업은 긴장의 대결지역을 화해와 평화지역으로 변모시켜 나가고 있는 "평화사업"입니다. 비무장지대 근처의 북한 지역 내에 남한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대규모 산업 단지인 개성공단 사업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표적인 남북 협력 프로젝트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개발 초기 단계에 인근 지역에 매설되어 있던 수많은 지뢰가 제거되었으며, 비무장지대를 가로지르는 경의선 도로를 통해 매일 수백명의 인원과 차량이 남한과 개성을 오가며 공단을 개발하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북 군당국이 인원과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매일 협조하며 군사적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 관리들과 근로자들은 개성공단 개발 및 운영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장경제시스템에 대해 학습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우리와 협의하여 내놓고 있는 개성공단 사업 관련 각종 법규(세금, 회계 등) 내용은 북한의 달라진 인식을 보여주는 실증적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성공단의 궁극적 비전은 명실공히 국제 경쟁력을 갖춘 공단으로서 입주기업들의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남북 공동번영과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정부는 입주기업, 개발사업자, 북한 당국 등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1단계 100만평 개발사업이 개성시 봉동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위　　치 : 개성시 봉동리 일원 100만 평(개성↔평양 160km, 개성↔서울 60km, 북방한계선 1.5km)
- 건설비용 : 2,641억원(토공자금 1,131억원, 국고지원 1,510억원)
- 사업시행 : 한국토지공사/자금 · 설계 · 분양, 현대아산(주)/시공

개성공단 2단계 이후 사업은 1단계 사업 성공의 토대위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기술집약적 공단, 첨단산업분야의 복합 공업단지로 조성해 나감으로써 개성공단을 남북경협의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사업추진경과

00. 8. 22 현대-北아태간 개발합의서 체결
02. 11. 27 北, 개성공업지구법 발표
02. 12. 1 北, 개성공업지구 토지이용증(50년) 발급
03. 6. 30 개성공단 1단계 건설 착공식 거행
04. 4. 13 토지임대차 계약 체결(토공, 현대↔北중앙특구총국)
04. 4. 23 1단계 100만평 협력사업 승인(통일부)
04. 6. 14 시범단지 15개 기업 입주계약 체결
04. 6. 30 시범단지 부지 조성공사 완료
04. 10. 5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출범
04. 12. 15 공장가동 및 제품생산 시작
05. 3. 16 시범단지 전력(1.5만 kW)공급 시작
05. 8. 1 본 단지 1차 5만평 분양공고
05. 12. 19 정·배수장 착공
05. 12. 28 개성공단 직통 전화 개통
06. 7. 11 본단지 부지조성 토공사 완료
06. 7. 24 기술교육센터 착공
06. 12. 21 한전, 10만 kW 남북 송전선 연결
07. 1. 31 총생산액 1억불(1억 61만불), 방문인원 10만명(105,669명) 돌파
07. 2. 28 북측근로자 12,000명 돌파

II. 1단계 사업 어디까지 왔나

Pilot Project로 추진되고 있는 시범단지 2만 8천평과 1차단지 5만평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2007년 2월말 현재 22개 기업 제품 생산 중 (시범단지 : 15개, 1차단지 : 7개)
- 2007년 2월말 현재, 북측근로자 12,000 여명(건설인력 포함),
  남측근로자 800여명 근무
  - 1단계 본격 가동시 약 7만~10만 여명의 북측 근로자가 입주기업에서 근무하게 될 것으로 예상

1단계 본 단지 개발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지조성 공사(토공사, 상하수도, 도로 등)

• 2007년 2월 말 현재 96% 공정, 2007년 상반기 완료목표로 추진

기반시설 공사

• 용수 · 폐기물처리시설 등 현재 공사 진행 중, 2007년 상반기 완료 목표로 추진

▷ 폐수처리장 착공(2005. 4. 29) / 정 · 배수장 착공(2005. 12. 19)
폐기물 처리시설 착공(2005. 12. 28)

본 단지 분양계획

• 2005년 8월~9월 본 단지 1차 5만평을 24개 업체 · 기관에 분양을 하였으며,
잔여 공장용지 175만㎡(53만평)을 일괄 분양할 계획

Ⅲ. 개성공단 기업환경은 어떠한가

개성공단은 우수한 입지, 경쟁력 있는 노동력, 세제 혜택 등에서
국제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입지여건

- 서울에서 60㎞, 인천에서 50㎞에 위치, 거대 소비처인 수도권을 배후지로 활용, 물류비 절감 가능
  ▷ 경의선 도로 · 철도 연결을 통해 인천공항, 인천항 활용 가능
- 평양에서 160㎞에 위치, 남북 경제협력의 전초기지 역할 수행
  ▷ 남북당국간 합의(2004. 6. 5)에 따라 「남북경협협의사무소」설치(2005. 10. 28)
- 향후 TCR(중국횡단철도), TSR(시베리아횡단철도)과 연결, 동북아 경제협력의 거점 역할 전망

운영여건

• 경쟁력 있는 노동력 확보, 저렴한 분양가

▷ 최저임금 月 57.5 US$ (사회보험료 7.5 US$ 포함 : 임금의 15%)
▷ 노동자들의 교육수준이 양호하고, 언어 및 문화장벽이 낮은 것도 이점
▷ 평당 149,000 원에 분양 (북측과의 토지임대차 계약체결일 (2004. 4. 13)로부터 50년간 사용)

• 매력적인 세제 혜택

▷ 법인세의 경우, 10~14% (국내 13~25%, 중국 15%, 베트남 10~15%)이며,
다양한 감면 혜택

• 남북 당국의 강력한 개발 의지

▷ 법 · 제도 마련, 투자자금 지원 등 남북 당국의 적극적인 자세

기반시설

• 도로 · 철도

– 도로(4차선, 통일대교 북단↔개성 간 12.1㎞), 2004. 11. 30 완공

– 철도(단선, 문산↔개성 간 27.3㎞), 2007. 2월말 현재 완료 단계

▷ 인천공항 · 인천항 활용, 동경, 홍콩, 상해 등 주요도시에 빠른 시간 내 접근 용이

• 전력 · 통신

– 전력(한국전력) : 현재 1.5만kW 배전방식으로 공급, 10만kW 송전방식으로 공급하기 위한 송변전공사 2007년 상반기 완공 예정

▷ 국내요금 수준으로 각 기업에 공급

– 통신(KT) : 시범단지 303회선 설치 운영 중(2007. 2월말 현재), 본단지 1만회선 연결 추진

▷ 문산–개성전화국–개성공단을 연결하며, 통신요금은 분당 40센트

• 용수, 오 · 폐수 및 폐기물 처리

– 용수 : 개성공단 1단계 지역 인근에 정 · 배수장(6만톤/일)건설, 공급

▷ 월고저수지(개성공단 북측 약 17km)를 취수원으로 이용, 2005. 12. 19 정 · 배수장 착공, 2007. 6 완공 예정

※시범단지는 지하수(관정 개발) 사용

– 폐수 및 폐기물 처리 : 폐수종말처리장(3만톤/일, 8,000평) 및 폐기물처리장(204천톤, 1.5만평)설치

※시범단지 내 폐수는 임시폐수처리장 설치 · 처리, 폐기물은 북측에 위탁처리

그러나,
물자 반출 문제, 해외 판로 확보 등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극복해야 할
제약요인도 있습니다.

- 원자재, 공장설비 등 개성공단에 보낼 특정품목이 1종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경우 대외무역법, 남북교류협력법 등에 따라 반출을 통제

  ▷ 미국산 기술 · 소프트웨어가 10% 이상 포함된 경우, 美 상무부 사전 승인 필요

- 주요시장인 미국, 일본은 북한산 제품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므로 판로 확보를 위한 업체별 자체 대책 마련 필요

  ▷ 단기적으로 내수용 판매, 반제품의 국내 반입, 무역장벽이 낮은 곳으로 수출 방안 등 마련 필요

  ▷ 일반적 기준에 따르면 개성공단 생산제품은 대부분 '북한산(産)'으로 판정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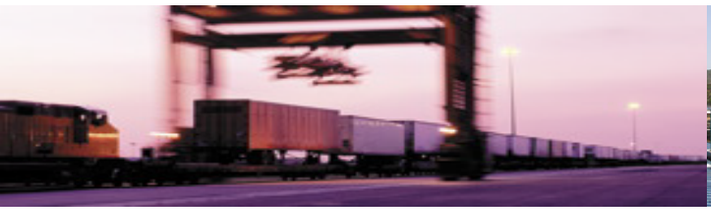

✲기타 기반시설 관련 문의사항은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건설지원팀
☎ (02) 3783-7453으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Ⅳ. 개성공단에 진출하려면 어떻게

개성공단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먼저 전략물자와 원산지 문제에 따른 판로확보 문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전략물자/수출통제품목 해당 여부 검토

• 대량살상무기(WMD)의 제조 · 개발 등에 전용 가능한 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며, 개성공단 반출을 위해서는 심사 · 판정 및 승인 절차가 필요

–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 (www.sec.go.kr) 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로그인 후 판정/허가지원→판정지원→자가판정지원 선택, '전략물자 판정/허가 시스템'에서 전략물자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

– 자가판정의 방법으로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여부를 직접 의뢰하여 판정받아야 함. (전략물자 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 접속 후 사전판정지원 참조)

☎ 무역협회 산하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 (02) 6000–5252~3

• 미국수출관리규정(EAR)에 따라 미국산 기술 · 소프트웨어가 10% 이상 포함된 제품을 개성공단에 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상무부의 사전 승인절차가 필요

– 한 · 미 간 별도 협의가 필요한 만큼 관련절차에 대해 통일부에 문의

☎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투자지원팀 (02) 3783–7442 (전략물자 전반/미 EAR 관련)

원산지 및 판로확보 문제

• 개성공단 수출품의 경우 원산지 규정에 관한 국제관례상 '북한산(産)'으로 판정, 주요 국가로부터 관세상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점에 유의

– 미국의 경우 북한산 제품에 대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등 사실상 수출이 어렵다는 점과

– 일본, EU의 경우 북한산 수출품목에 따라서는 다소 불리한 관세 혹은 쿼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 개별 기업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내수용 판매, 개성공단 수출품에 대한 관세상 불이익이 없는 지역으로 시장을 개척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한–싱가폴 자유무역협정(FTA)체결시 남측으로 반입되어 싱가폴로 수출되는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키로 결정

▷ 한–EFTA, 한–ASEAN 자유무역협정 체결시에도 역외가공방식(국내 원부자재 60% 이상 이용)을 활용한 개성공단 생산 제품에 대해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 부여 결정

▷ 한–싱가폴 FTA(2006. 3. 2)와 한–EFTA FTA(2006. 9. 1)는 발효되었으며, 한–ASEAN FTA는 국회비준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

☎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투자지원팀 (02)3783-7442

개발사업자로부터 분양을 받고, 구체적 사업계획에 대해 통일부의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후 현지 투자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밟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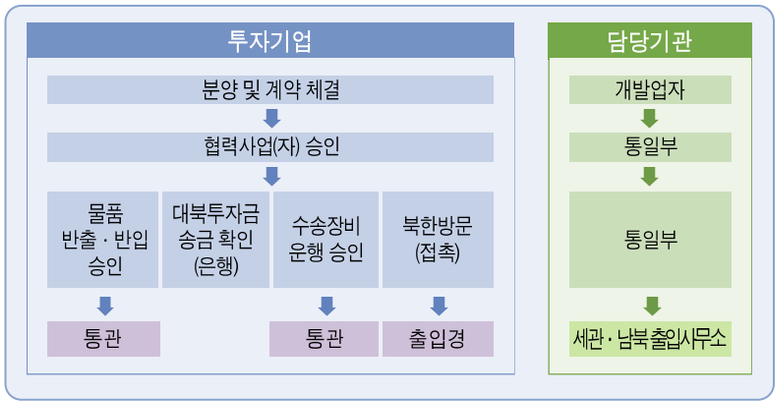

분 양

- 본 단지 추가 분양대상 : 공장용지 175만 ㎡(53만평), 지원시설용지 10만 ㎡(3만평)
- 분양기관 : 한국토지공사
- 분양일정 : 본단지 공장용지 중 잔여부지를 일괄분양

✻기타 분양관련 문의사항은 한국토지공사 개성사업처 분양팀
☎ (031) 738-7479, 7565, 7449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양시기 및 대상,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토지공사가 공고하는 분양공고문을 참고하십시오.

협력사업(자) 승인 및 변경

- 협력사업(자) 승인은 승인신청서 및 분양확인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남북교류협력시스템(http://inter-korea.unikorea.go.kr) 을 통해 신청
  - ▷ 사업계획서에는 투자계획, 자금조달 운용계획, 생산 · 판매계획, 조직 · 인력계획, 반출물자, 추진일정 등을 포함
  - ▷ 기 승인받은 업체가 투자금액 변경, 업종 추가 등 협력사업 변경시에도 남북교류협력 시스템을 통해 신청
- 신청후 10일 이내에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승인여부 결정
  - ▷ 승인담당기관 :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 (02) 3783-7414

✲분양계약 체결 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일부로부터 사업(자) 승인을 받으면 개성공단에 투자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완비됩니다.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개성공업지구 방문 및 협력사업승인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제정, 제출서류, 처리기한 등을 대폭 간소화하였습니다.

대북투자 신고

-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후 투자실행에 앞서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에 따라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외국환거래 취급 은행)장에게 신고
  - ▷ 대북투자신고서, 협력사업 승인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
- 개성 현지에 현금을 송금할 경우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은후 송금하며, 현물로 출자할 경우 신고한 내용에 따라 물자반출후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함.

물품 반출입 승인

• 승인을 필요로 하는 물품 : 「남북한 교역대상 물품 및 반출 · 반입절차에 관한 고시」에 규정

▷ 컴퓨터, 전략물자 해당품목, 반입도서 · 미술품 등

• 방법 : 남북교류협력시스템 (http://inter-korea.unikorea.go.kr) 에 승인 신청

▷ 승인담당기관 :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투자지원팀 ☎ (02) 3783-7443

• 승인 후 통관절차(세관 반출입신고 및 적하목록 제출)

– 물자 반출입시 남북출입사무소 내 세관에 수출입신고필증(Packing List, Invoice포함) 제출 후 검사 및 통관

▷ 수출입신고필증 : 관세사 대행 또는 직접 신고하여 서울세관에서 발급

✻승인을 요하는 품목 이외에 개성에 오가는 물품에 대해서는 별도 승인 절차없이 통관시 수출입신고필증의 세관 제출→검사를 거쳐 반출입이 이루어집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협력사업 승인 범위 내에서의 반출 · 반입을 포괄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통일부장관의 신고없이 반출 · 반입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협력사업용물품의 반출입 신고 제도」를 2005년 3월 23일부로 폐지하였습니다.

• 남북한 반출입 금지 품목

– 남측 :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통일부고시 제99-1호)에 따라 반출입 금지 및 제한 품목 규정

남측 반출입 금지 및 제한 품목

◉ 반입 금지 물품

-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 ·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도서 · 간행물 · 영화 · 음반 ·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 화폐 · 수표 · 어음 ·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 모조품
- 총포 · 도검 및 화약류 등
-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와 이들의 생산품
- 기타 출입심사공무원이 위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물품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 · 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한 규제 물품 및 이를 성분으로 한 의약품
- 호골, 웅담, 사향, 해구신 등

◉ 반출 금지 물품

- 군사상 기밀 및 남한 당국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
- 군수물자와 방위산업용품(국제군수품 목록에 규정된 품목)
- 문화재관리법에 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이 금지된 문화재

◉ 반출 · 반입 제한물품

「남북한 교역대상 물품 및 반출 · 반입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 ·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

- 식품류(식품위생법 제16조에 해당하는 물품)
- 검역대상 물품
- 전략물자 · 기술 수출입 통합공고에 의한 수출 규제 품목
- 기타 물품의 성질 또는 수량으로 보아 여행자의 여행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 북측 : 「개성공업지구 세관규정」(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3호)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내 반출입 금지 품목 지정

북측 반출입 금지 및 제한 품목

⊙ 반입 금지 물품

- 무기, 총탄, 폭발물(공업지구 공사용은 제외), 군수용품, 흉기
- 쌍안경 · 망원경(배율 10배 이상), 사진기(160mm 이상의 고정 렌즈)
- 무전기와 그 부속품
- 독약, 극약, 마약 및 방사성 물질, 유독성 화학물질
- 사회질서와 민족의 미풍양속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출판인쇄물 또는 그 원고, 필름, 사진, 녹음녹화테이프, 소리판, CD, 미술작품, 수공예품, 조각품
- 전염병 발생지역에서 들여오는 정해진 물품
- 반입금지 합의 물품

▷ 기타 북측은 핸드폰, 차량GPS장비, 무선기기, 저장장치, 캠코더 등 금지

⊙ 반출 금지 물품

- 무기, 총탄, 폭발물, 군수용품, 흉기
- 무전기와 그 부속품
- 독약, 극약, 마약 및 방사성 물질, 유독성 화학물질
- 역사유물
- 기밀에 속하는 문건, 출판인쇄물(사본한 것 포함)과 그 원고, 필름, 사진, 녹음녹화테이프, 소리판, CD
- 반출금지 합의 물품

공장설계 및 건설업체 선정

• 각 기업별로 시범단지 사례, 북측과의 협조 측면, 설계 및 건축 단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건설업체를 선정

✻ 시범단지 공장의 경우 평균 공사비는 국내 건축비용 보다 높은 편이었습니다.
– 건축기간도 국내보다 20~30% 더 소요되었습니다.

V. 개성으로 가는 길, 개성에서 오는 길

개성공단 방문을 위해서는 북한방문증명서 발급 및 차량운행 승인 등 사전 준비 절차가 필요합니다.

• 방북에 필요한 서류 구비

– 개성공단 출입증명서 : 방문 10일전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서울지사에 신청

▷ 신청기관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서울지사 ☎ (02) 3783-7708~9

– 방북증명서 : 출입문건(초청장) 발급 후 방문 예정 5일 전까지 남북교류협력시스템 (http://inter-korea.unikorea.go.k r)에 발급신청서 및 인적사항을 입력 · 신청

▷ 방북증은 단수와 수시 2종이 있으며, 수시방북증은 증명서 유효기간 동안 횟수에 상관없이 통일부가 승인한 방북기간 내 방북 신고 후 재사용 가능

▷ 개성공단사업지원단,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서울지사 오시는 길 : http://www.kidmac.co m 참조

✲구체적인 방북일자가 정해지면, 방북 3일 전 ①출입통행계획서 ②사진명단을 작성합니다.

– 출입통행계획서 : 남북교류협력시스템(http://inter-korea.unikorea.go.kr) 에 입력

– 출입통행계획서 및 사진명단 : 소정 양식에 작성, 관리위원회 서울지사 웹하드(www.webhard.co.kr) 에 업로드

※ 관련문의 : 관리위원회 서울지사 (02) 3783-7708~9

✲최초 방북시에는 방북안내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 교육 신청 및 교육일자 안내 :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 (02) 3783-7413, 7415

– 교육장소 : 통일부 통일교육원(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 일용직근로자, 업무협의차 방문하는 바이어 등은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영상방북교육으로 대체 가능

※ 행사성 방문인원의 경우 개성공단 운행차량 내에서 방북교육용 DVD동영상 시청

• 물자와 인원수송을 위한 차량운행 준비

– 수송장비운행승인서 : 차량운행 5일 전 남북교류협력시스템
(http://inter-korea.unikorea.go.kr) 에 수송장비운행 승인 신청

▷ 첨부서류 : 차량등록증, 운행계획서 등

▷ 발급기관 : 통일부 남북경제협력본부 남북교역물류팀 ☎ (02) 2100-5885

– 통행차량등록증명서 : 수송장비운행승인서 입력시 자동으로 신청 처리됨

▷ 신청 · 발급기관 : 관세청(서울세관) ☎ (02) 3438-1142

▷ 개성공단 출입시 남북출입사무소 내 세관에 통행차량등록증명서를 제출하고 차량출입신고를 위하여 차량 출발 · 도착 보고서를 제출, 출입경 심사인을 날인 받아야함.

✲승인신청 처리기간 기존 30일→5일로 단축, 운행승인 유효기간 부정기 1년, 정기 2년으로 확대(2005. 6. 13), 통행차량등록증명서 인터넷 발급 (2005. 7. 4 시행)등 수송장비운행 승인 절차가 개선됐습니다.

• 기타 준비사항

– 개성 현지에서는 달러화만 통용, 개성공단 내 국내은행 지점에서 환전 가능

▷ 미리 환전하여 달러화를 소지하고 개성을 방문하는 것도 무방

– 개성 현지에서 숙박이 필요한 경우, 출입통행계획서 제출 이전에 미리 관리위원회에 연락, 숙박 가능 여부를 확인 ☎ (001) 8585-2030

– 개인 세면도구 등은 가급적 지참, 공단 내 편의점에서 간단한 물품은 구입 가능

✲외국인은 방북 증명서 없이 북측의 초청장만으로 개성방문이 가능합니다. (여권으로 출입심사)

▷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서울지사에 소정의 양식에 따라 북측 초청장 발급 신청

▷ 북측으로부터 초청장을 발급받은 후, 방북 3일 전까지 출입통행계획서 및 사진명단을 작성, 관리위원회 서울지사에 통보

개성공단에 갈 때에는

방북증명서 등을 필히 소지하고, 남측 출입사무소에 도착하여
출입 · 세관 · 검역 심사를 거쳐 지정차량에 탑승하시면 됩니다.

• 개성공단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 운행 : 1일 왕복 1회, 주 6일(월~토요일)
현대 계동사옥(비원주차장)에서 07 : 40 출발(요금 편도 8,000원)

▷ 셔틀버스 이용 문의 : 현대아산(주) 출입팀 ☎ (02)3669-3991

• 사전에 승인된 자가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방북 당일 출입계획서상 MDL 통과 1시간 전까지 남북 출입사무소에 도착

✲남북출입사무소에서 하차, 수속을 받게 됩니다.

– 신고서 작성

– 검역(필요시 검역증을 제출)→세관검사(반출입의 경우 출발보고서, 차량운행자는 통행차량등록증명서 제출)→출입심사

• 북측 출입사무소 출입심사 및 세관심사시 유의사항

– 핸드폰, 차량 GPS 장비, 각종 CD, 테이프 등 무선기기 및 저장장치, 북측의 오해를 살 수 있는 문건 · 책자, 쌍안경 · 망원경(10배 이상), 카메라(160㎜ 이상 부착), 캠코더 등은 소지 불허

– 북측 세관원의 질문에 정중히 답변하고, 북측 세관원이 물품이나 가방을 열어 볼 수 있다는 점에 유의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의 출입증명서에 의한 개성 방문이 가능해짐에 따라 7일 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은 개성공단 도착 48시간 내에 북측 출입사업기관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귀환시에도

개성공단에 갈 때와 마찬가지로 해당증명서를 필히 소지하고,
북측 출입사무소에 도착, 출입 · 세관 · 검역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 개성공단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 운행 : 1일 왕복 1회, 주 6일(월~토요일)
– 현대아산(주) 개성사무소에서 15 : 40경 출발
▷ 사전에 필히 탑승시간과 장소를 확인!

• 사전에 승인된 자가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방북 당일 출입계획서상 MDL 통과 1시간 전에 북측 출입사무소로 출발 준비

✲개성공단에서 물품을 반출입하는 경우, 개성공단 내 북측 세관에 반출입 신고서를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외화는 제한 없이 반출입할 수 있으나, 귀금속과 보석은 신고해야 합니다.

▷북측 출입사무소에 기념품을 구입할 수 있는 아리랑매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측 세관에서 1인당 주류 1병으로 제한하고, 일부 반입을 불허하는 품목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측 출입사무소 도착, 세관신고시 유의사항

– 북한산(産) 물품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되지 않음.

▷ 북측의 원산지증명서 없이도 반입자의 원산지신고에 대해 세관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원산지 확인을 갈음 (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 원산지 신고서 등을 세관장에게 제출)

※ 입경시 검역 – 출입심사 – 세관검사 순으로 입경수속 거침

Ⅵ. 개성현지 기업활동은 어떻게

개성현지 기업 활동을 위해서는 우선 관리위원회에 기업창설 승인신청, 승인 후 기업등록, 세관 · 세무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개성공단 관리를 위해 북측의 개성공업지구법 (제24조) 및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설립운영 규정에 의해 설립된 북측기관으로서, 남측의 인력이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 개성 현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각종 인 · 허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창설 및 등록

• 기업창설 승인신청

– 입주기업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기업창설승인신청서 및 첨부 서류 제출

▷ 첨부서류 : 기업창설신청서, 협력사업 승인서 사본, 기업규약 등

– 관리위원회에서는 10일 이내에 승인여부 결정

• 기업등록

– 입주기업은 등록자본(총투자액의 10% 이상) 또는 그 이상 액수를 투자한 후 관리위원회에 기업등록 신청

▷ 첨부서류 : 기업등록신청서, 기업창설승인서 사본, 토지이용권등록증 사본, 투자실적확인 문건

– 관리위원회는 7일 이내에 처리하고 기업등록증 발급

• 세관 및 세무등록

– 기업등록 후 20일 이내에 공업지구세관에 세관등록, 공업지구세무소에 세무등록

▷ 현재, 세무등록은 북측 공업지구세무소 본격 운영시까지 관리위가 대행

개성공단 내 기업경영 활동은 북측이 제정한 「개성공업지구법」과 「노동규정」, 「세금규정」 등 하위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부동산 · 건축

- 토지공사로부터 분양을 받은 후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분양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토지이용권 등록신청서를 제출

– 관리위원회가 신청기업에게 토지이용권 등록증을 발급

▷ 토지공사로부터 분양받은 날부터 토지이용권 취득

- 공장 건축은 관리위원회에 건축허가신청서와 착공신고서를 작성 · 신청하고, 관리위원회가 건축허가, 착공허가를 통보

– 전기 · 소방 · 가스설비 등에 대한 준공전 검사, 준공검사, 준공공사 승인서 발급, 건축대장 등재, 공장등록 등의 순서로 진행

▷시범단지의 경우, 건폐율 50%, 용적률 100%, 4층 이하, 대지면적의 15% 이상의 조경, 주차장 설치 등을 공장건설 기준으로 적용

- 신축 건물에 대해 관리위원회로부터 준공검사를 받고 준공검사증과 토지이용권 등록증을 첨부하여 건물소유권 등록신청서를 제출

– 관리위원회가 신청기업에게 건물 소유등록증을 발급

▷신축 건물의 경우 준공검사 합격일, 분양 · 양도 건물은 관리위원회 등록일부터 건물소유권 취득

✻토지 및 건물 이용기간 내 토지이용권, 건물소유권의 일부 또는 전부의 양도, 임대, 저당이 가능합니다.

–관리위원회에 등록수수료 납부, 양도 · 임대 · 저당 등록

✻부동산 소유자 사망시 재산상 권리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관리위원회에 상속등록을 하면, 상속부동산에 대한 양도, 임대, 저당 가능

✻토지공사로부터 분양 받은 후 10년이 지난 다음해부터는 매년 토지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토지사용료는 관리위원회와 북측 지도총국이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

노무관리

• 인력 채용 및 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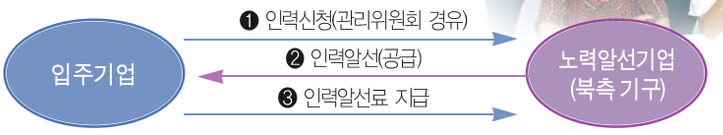

– 각 기업별로 직무별 필요인원을 문서로 작성하여 관리위원회를 경유, 북측 노력알선기관에 신청함으로써 입주기업과 북측 노력알선기관 간 협의를 진행

▷ 입주기업과 노력알선기관 간 노력알선계약을 체결하여 인력을 공급 받은 후, 입주기업은 북측이 알선한 인력에 대해 기능시험, 면접 등을 통해 채용 여부를 결정

– 해고시에는 당사자에게 30일 전까지 사유를 통보하고 해고종업원 명단 및 해고사유를 노력알선기업에 제출

▷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해고 조건, 해고할 수 없는 조건 등 규정

✲노력알선에 대하여 채용 1인당 17 US$의 노력알선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임 금

– 월 지급 최저임금 : 57.5 US$ (임금의 15%인 사회보험료 7.5 US$ 포함)

– 인건비 상승률 : 연 5% 미만

– 지급방식 :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이 원칙이며, 현재 북측과 직접 지급의 시행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협의 중

※ 현재 북측근로자는 57.5 US$ 가운데 사회보험료와 사회문화시책금(50 US$의 30%)을 제하고 35 US$ 가량을 대부분 현물(생필품)로 수령

※ 생필품은 대부분 중국 등에서 수입되며 개성시내 개성공단 전용매장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공급

– 노동시간 : 주 6일제 48시간

▷ 연장 및 야간근무 : 기준급여의 50% 추가 지급, 공휴일 근무 : 기준급여의 100% 추가 지급

– 휴 가

▷ 정기휴가 年 14일, 보충휴가 2~7일 (유해업무 종사자)

▷ 출산 휴가 : 150일 (유급 60일)

• 노동보호 : 기업은 산업위생조건 보장 및 노동안전시설 구비 의무

세 금

- 개성공업지구의 세금은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거래세, 영업세, 지방세 등으로 분류
- 세율 및 감면제도

구분		납세의무자	과세기준	세율	감면제도
기업 소득세		개성공단에서 소득을 얻은 기업	결산이윤	14% (일반업종)	• 장려 · 생산 부문 투자 : 15년 이상 운영하는 기업은 이윤발생년도부터 5년 면제, 이후 3년 50% 감면
				10% (경공업, 하부구조, 첨단과학 등 장려부문)	• 서비스부문 투자 : 10년 이상 운영하는 기업은 이윤발생년도부터 2년 면제, 이후 1년 50% 감면 • 이윤 재투자 : 3년 이상 운영시 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의 70%를 다음년도 세금에서 감면
개인 소득세		개성공단에 182일 이상 체류하며 소득을 얻은 개인	월 보수액에서 30%를 공제한 금액이 500 US$ 이상일 경우	4~20%	• 남북 당국 협정에 의한 소득 면제 • 북측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저축성 예금이자와 보험금 또는 소득 면제 • 공업지구에 설립된 은행에 비거주자들 예금의 이자소득 면제
재산세		매년 1월 1일 현재 공단 내 영구 건물 소유자	건물 용도별 취득 시 현지가격	0.1~1%	• 신규 건물소유자는 등록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
상속세		공단 내 재산을 상속 받은 자	세금규정에서 정한 지출을 공제한 금액의 상속 재산액	6~25%	-
거래세		생산부문의 기업	생산물 종류별 판매 수입금	1~15%	• 생산제품을 남측 혹은 다른 나라에 수출할 경우 면제
영업세		서비스부문의 기업	건설, 금융 등 부문별 서비스 수입금과 건설물인도 수입금	1~7%	• 하부구조 부문 기업 면제 (전기, 가스, 용수,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지방세	도시 경영세	개인 및 기업	월 노임총액 또는 월 수입총액	0.5%	-
	자동차 이용세	매년 1월1일 현재 공단 내 자동차를 소유한 기업 또는 개인	자동차 종류	3~60 US$	• 60일 이상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는 자는 미사용 기간 면제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2003. 8. 20 발효)에 의해 입주기업 발생 소득에 대해서는 남북 중 일방에서만 과세되며, 남측에서는 소득세 · 법인세 · 소득할 주민세가, 북측에서는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소득에 대한 지방세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외환 · 금융 · 회계

• 개인 및 기업은 제한 없이 외화를 보유하거나 은행에 예금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공업지구 이외 지역으로의 입출금이 가능

– 귀금속 이외의 외화는 세관신고 없이 반출입이 가능, 이윤 및 소득의 송금은 비과세

▷ 기준화폐는 US$이며, 각 기업은 기준화폐로 모든 회계를 처리

▷ 외화범위 : 전환성 외화 현금, 전환성 외화로 표시된 채권, 주식 등 유가증권, 양도성 예금증서, 어음, 수표 등 지불수단, 장식품 아닌 귀금속 등

– 개성공업지구 내 설립된 은행에서 외화계좌를 개설

✲개성공단 내에 우리은행이 입점(2004. 12. 1)해 있습니다.

✲관리위원회에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면 국내 은행이나 외국은행에도 개성공단 현지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매 반기 계좌별로 외화수입 지출문건을 작성하여 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 개성 현지법인은 국내 모기업과 독립된 회계단위로 처리

–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에 따라 회계화폐는 US$로 하며,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규정」에 따라 회계검증사무소의 회계검증을 받아야 함.

▷ 현재 북측과 관리위원회는 국제관례와 방식에 준하여 회계처리 및 회계검증이 이루어지도록 세부규정(안)을 마련 중

보 험

•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에 따라 개인 및 기업은 북측 지도총국이 지정한 공업지구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

– 세부 절차 및 방법에 대해 북측 지도총국과 관리위원회가 협의 중

▷ 북측은 개성공업지구 보험사업자로 '조선민족보험총회사(KNIC)' 선정(2005. 1. 26)

✻의무보험 대상

– 화재, 폭발, 자연재해로 건물 및 기계장치에 생긴 물질적 손해
– 가스사고로 제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생긴 손해
–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사망, 부상당하게 하거나 제3자의 재산에 입힌 손해
– 종업원이 노동과정에 재해로 입은 손해(북측 종업원 제외)

물자 관리

• 관세 면제

– 개성공단 내 반출입 물자와 북측의 기관 · 기업소 · 단체에 위탁 가공하는 물자는 관세를 면제

▷ 단,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물자를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공업지구 밖 북측 영역에 판매하는 경우 관세부과

✻국내에서도 원산지가 북측인 반입물품은 관세가 면제됩니다.

– 다만,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국세를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 개성공단 생산제품 원산지 확인

– 개성공단으로부터 반입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은 반입자의 신고에 대한 우리측 세관의 확인으로 갈음

• 개성공단 생산제품 원산지 표기

– 국내에 반입,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및 통행차량 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 2005. 3. 10 시행)에 따라 한국산(産) 또는 북한산(産)으로 표시

※ 국내 투자지분과 국내산 직접재료비 비중이 60% 이상인 경우에 국내산으로, 이외의 경우 북한산(産)으로 판정

▷ 국내산(産)인 경우, Made in Korea, Made in Korea(Gaeseong), 한국산 등으로 표시

▷ 북한산(産)인 경우, Made in DPRK(Gaeseong), 북한산(개성) 등으로 표시

– 다른 나라로 수출될 물품인 경우, 수입국별 원산지 규정과 기준에 따라 판단

✻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판로 개척을 위해 내수, 반제품 국내반입 후 완제품 생산, 무역장벽이 없는 곳으로 수출 등 업체별 대처가 필요합니다.

✻ 정부는 앞으로 미국 · 일본 등에 수출 가능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한-싱가포르, 한-EFTA, 한-ASEAN FTA(자유무역협정)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산과 동일한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타국가와 FTA협상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개성공단에는 입주기업과 근로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각종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현재 관리위원회 사무동 별관에 위치하고 있으며, 향후 수요 증대에 따라 공공 ·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갈 예정

환전 · 송금

- 우리은행 개성지점 : 입출금 및 계좌관리

편의점

- 훼미리마트 : 국내 음식료품, 주류 · 담배, 생필품 판매(US$ 사용)
  ▷ 08:00~20:30 영업

의 료

- 그린닥터스 개성병원 : 응급 진료(의사, 간호사 상주)
  ▷ 간단한 처치의 경우 무료 진료

그린닥터스 개성병원에서 응급처치 후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남북 출입기관과 군당국의 협조를 얻어 일산 · 파주지역 종합병원으로 곧바로 이송될 수 있도록 응급구호체계를 마련하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숙 식

- 식당 : 아라코(주) 운영 구내식당(아침 · 점심 · 저녁 제공, 1식 4 US$)
  ▷ 현대아산(주) 협력업체 인원, 현대아산(주) 복지회관 식당(1식 4 US$)이용
- 숙소 : 관리위원회 게스트하우스(1박 30 US$)

소방안전

- 관리위원회 소방대 운영 : 소방차 · 화학차 · 지휘차량 각 1대, 소방요원 13명(남2, 북11)

Ⅶ. 개성공단 입주기업 활동 지원

남북당국간 각종 경협관련 합의서와 관련 규정 제정,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각종 지원으로 더욱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합니다.

지원체계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 구성 : 남측 인원들로 구성

– 기능 : 공단관리, 각종 인허가 서비스 제공, 투자 · 경영활동 지원

✲관리위원회 임무

– 투자조건의 조성과 투자유치
– 기업의 창설 승인, 등록, 영업허가
– 건설허가와 준공검사
– 토지이용권, 건물, 윤전기재의 등록
–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지원
– 하부구조 시설의 관리
– 공업지구의 환경보호, 소방대책
– 남측지역에서 공업지구로 출입하는 인원과 수송수단의 출입증명서 발급
– 공업지구관리위원회 사업준칙 작성
– 기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 위임 사업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서울지사 ☎ (02)3783-7708~9 FAX : (02)3783-7717
홈페이지 : http://www.kidmac.com

•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 통일부, 산자부, 건교부, 재경부, 정통부, 노동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중기청 등 10개 부처 참여, 6팀으로 구성

– 각종 제도 수립, 입주기업 지원 등 개성공단과 관련하여, 정부가 처리할 모든 사항을 지원단에서 창구를 일원화하여 처리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임무

– 개성공단사업 지원정책 수립 및 총괄 조정
– 개성공단 통행 · 통관, 노무관리, 보건 지원
– 개성공단개발을 위한 투자활성화 방안 수립
– 개성공단건설공사와 관련된 지원대책 수립
– 개성공단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
– 개성공단 법 · 제도 구축 지원

▷ 지원총괄팀 : ☎ (02)3783-7415, FAX : (02) 3783-7490
▷ 운영지원팀 : ☎ (02)3783-7434, 7438, FAX : (02) 3783-7495
▷ 투자지원팀 : ☎ (02)3783-7441~7444, FAX : (02) 3783-7491
▷ 건설지원팀 : ☎ (02)3783-7451~7455, FAX : (02) 3783-7491
▷ 개발기획팀 : ☎ (02)3783-7418, 7419, FAX : (02) 3783-7490
▷ 법제지원팀 : ☎ (02)3783-7439, 7436, FAX : (02) 3783-7495

개성공단 적용 법규 및 남북간 합의서

• 개성공업지구 적용 법규 및 합의서(2007년 2월 말 현재)

구 분	명 칭
개성공업 지구법 및 하위규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법 – 개성공업지구 개발규정 – 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운영규정 –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 –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설립운영규정 – 개성공업지구 출입, 체류, 거주규정 – 개성공업지구 세관규정 – 개성공업지구 외화관리규정 – 개성공업지구 광고규정 –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 –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 –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 개성공업지구 기업재정규정 –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규정 – 개성공업지구 자동차관리규정 – 개성공업지구 환경보호규정
개성공업 지구관련 합의서	–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4대 경협 합의서	–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기타 관련 합의서	–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 –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

구 분	명 칭
개성공업 지구관리 위원회 사업준칙	– 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운영준칙 – 개성공업지구 부동산등록준칙 – 개성공업지구 부동산집행준칙 – 개성공업지구 지적준칙 – 개성공업지구 토지계획 및 이용에 관한 준칙 – 개성공업지구 하부구조시설관리준칙 – 개성공업지구 건축준칙 – 개성공업지구 건축에 관한 세부지침 – 개성공업지구 건축물에 구조에 관한 세부지침 – 개성공업지구 건축물에 설비에 관한 세부지침 – 개성공업지구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 등에 관한 세부지침 – 개성공업지구 설계도서작성에 관한 세부지침 – 개성공업지구 가스안전관리준칙 – 개성공업지구 건설안전관리준칙 – 개성공업지구 노동안전준칙 – 개성공업지구 소방준칙 – 개성공업지구 전기안전관리준칙 – 개성공업지구 대기환경관리준칙 – 개성공업지구 소음·진동관리준칙 – 개성공업지구 수질환경관리준칙 – 개성공업지구 식품위생 및 전염병예방준칙 – 개성공업지구 폐기물관리준칙 – 개성공업지구 외화관리준칙 – 개성공업지구 광고준칙 – 개성공업지구 야외광고물기준 세부지침 – 개성공업지구 자동차등록준칙 – 개성공업지구 자동차등록번호부여와 자동차 등록번호판부착 및 봉인에 관한 세부지침 – 개성공업지구 기업책임자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준칙 – 개성공업지구 석유판매업준칙 – 개성공업지구 수수료징수 등에 관한 준칙 – 개성공업지구 주요물자관리준칙 – 개성공업지구 준칙제·개정절차 및 공포에 관한 준칙 – 개성공업지구 통계자료 등에 관한 준칙

개성공단 입주기업 보증지원제도

•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원활히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보증지원제도를 도입·운영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업무영역에 따라 기업별로 특화지원

▷ 신용보증기금은 일반기업 보증 담당/기술신용보증기금은 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 등을 주로 담당

• 지원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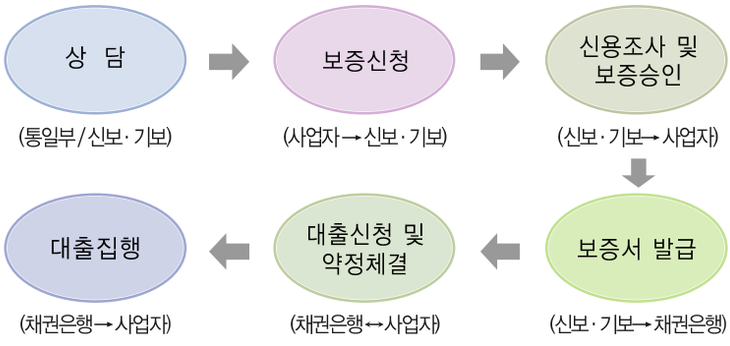

▷ 신기보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 보증대상 : 개성공단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국내 母기업

※ 일정 신용등급 이상인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입주 신청 현황과 기업 상태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신축적으로 결정

• 보증비율 : 부분보증(시설자금은 90%, 운전자금은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비율 적용)으로 운용

• 보증한도 : 기업당 100억원(시설자금 100억원, 운전자금 70억원)

※ 기업당 전체 보증한도는 母기업의 신용보증잔액을 포함하며, 투자자금의 70% 이내 대출이 가능하도록 보증서 발급

• 보증료 : 보증료 운영기준에 따라 年 0.5~3% 수준

• 보증기간 : 시설자금 7년, 운전자금 5년 이내

▷ 보증지원제도 관련 문의 :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투자지원팀 ☎ (02)3783-7444
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부 ☎ (02)710-4146

손실보조제도

• 경협사업자가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상위험 등의 사유로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액의 90% 까지를 기금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제도

▷ 담보하는 위험 : 북한의 투자재산 몰수 · 박탈, 전쟁, 내란, 남북당국의 사업중단 조치 등

• 약정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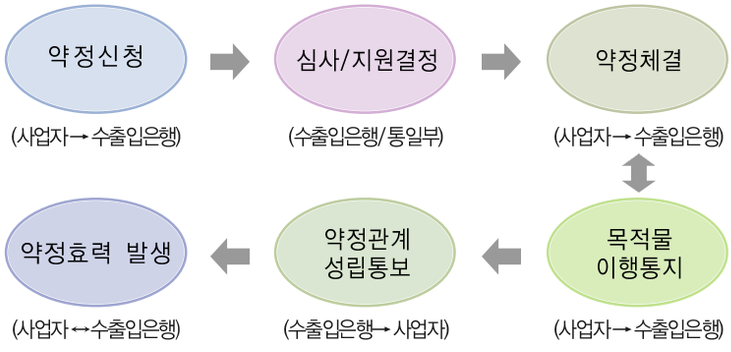

• 약정기간 : 10년 이내에서 신청자가 선택

• 약정금액 : 원칙적으로 약정가액(계약 · 투자금액) × 90%

• 약정한도 : 기업당 50억원, 다만 투자규모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 협의회 의결을 거쳐 100억원까지 가능

• 손실보조 수수료 = 약정금액 × 손실보조수수료율(기본요율 연 0.5%, 중소기업은 25% 할인)

▷ 손실보조 수수료는 매년 분기별 납부

▷ 손실보조제도 관련 문의 :

·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투자지원팀 ☎ (02)3783-7444 (손실보조제도 전반)

· 한국수출입은행 남북협력본부 ☎ (02)3779-6706, 6707 (손실보조제도 운용)

개성공단 Network

구분		기관명	전화번호	웹주소
개성공단 지원업무 총괄	업무총괄, 방문승인 협력사업승인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지원총괄팀	(02)3783-7415	http://www.unikorea.go.kr http://blog.naver.com/unigaeseong
	통관 · 통행, 노무, 보건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운영지원팀	(02)3783-7434	
	자금대출, 기술/판로지원, 전략물자, 원산지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투자지원팀	(02)3783-7443	
	기반시설 건설 환경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건설지원팀	(02)3783-7453	
	중장기 개발계획수립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개발기획팀	(02)3783-7418	
	법률 · 제도, 세금 · 보험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법제지원팀	(02)3783-7439	
북측출입문건(초청장) 또는 출입증, 현지 개성공단 관련 업무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서울지사	(02)3783-7708~9	http://www.kidmac.com
시행(분양)		한국토지공사	(031)738-7565	http://www.iklc.co.kr
시공		현대아산(주)	(02)3669-3881	http://www.hdasan.com
통관 · 통행		통일부 남북경제협력본부 남북교역팀	(02)2100-5885	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	(031)950-5061 5062	http://www.unikorea.go.kr
		관세청 서울세관	(02)3438-1142	http://seoul.customs.go.kr
기금		통일부 남북협력기금팀	(02)2100-5917	http://www.unikorea.go.kr
		한국수출입은행	(02)3779-6625	http://www.koreaexim.go.kr
전략물자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	(02)6000-5393	http://stic.kita.net
원산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02)3460-7415	http://www.kotr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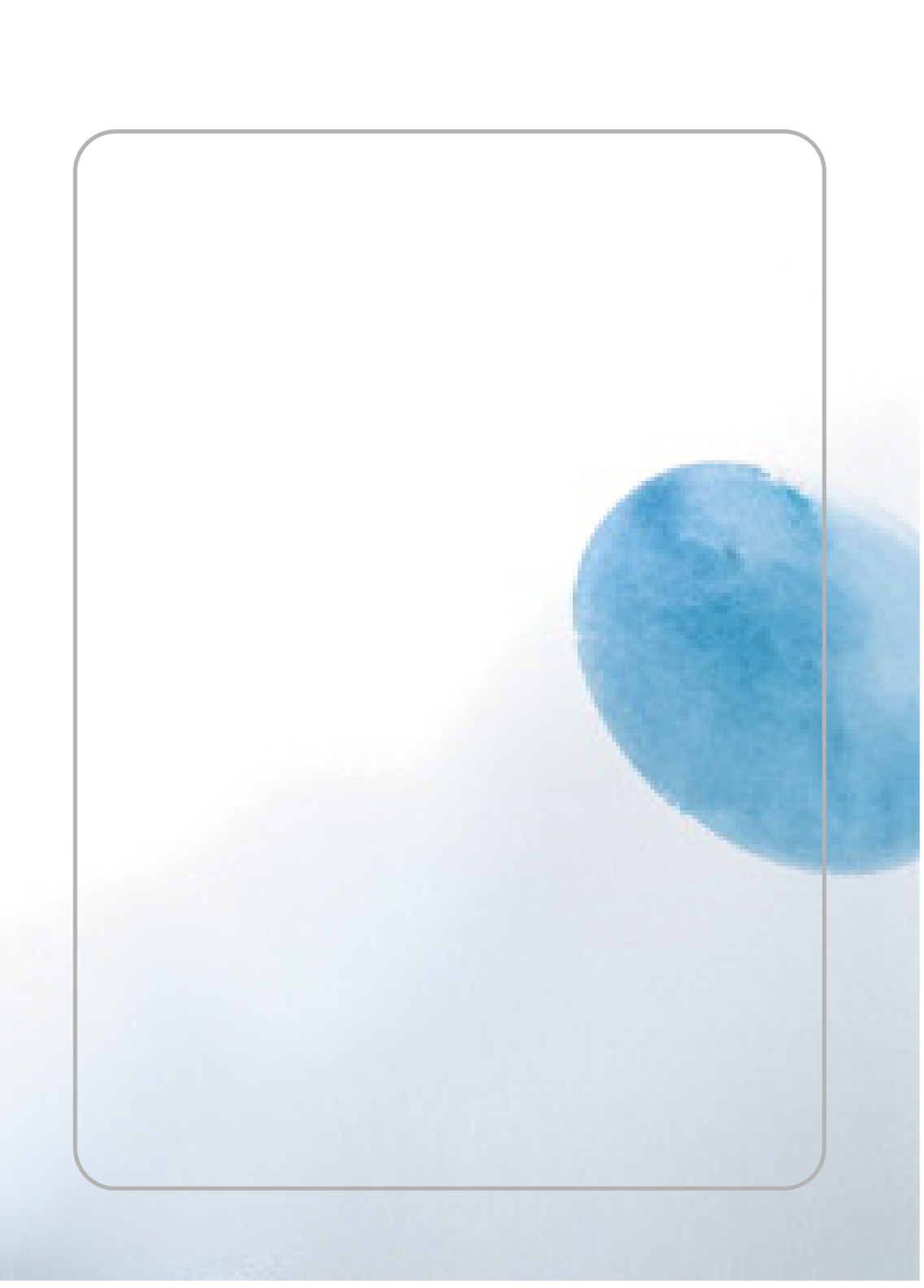
Memo